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현 (외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공관의 장이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664호, 2026.5.19.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법률 제21664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7. 6. ~ 8. 18.)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과 그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 법인, 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 회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이 궐위된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관의 차상급자 내지 그 밖의 적절한 직원 또는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분과위원회의 장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 등을 협의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자 및 논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회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밖의 유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전달할 수 있다.
- ④ 협의체의 구성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협의체의 구성원은 협의체 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의 의제)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회의 참석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문화교류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2. 한국어·한국학 진흥 등에 관한 사항
3.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수주 지원, 방위산업 수출 확대, 과학기술 및 경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해외위난 등 발생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공급망·에너지·자원 및 식량안보 협력 등 경제안보외교 등에 관한 사항
7. 재외동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정보보안)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통상 관계 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등 관련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열람·배포를 제한하는 등 해당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임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혁신행정부무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7881